2021년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재공고

- 공공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민간-공공협업기반 콘텐츠 개발 지원 -

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고용노동부,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받아 지역·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문화콘텐츠 분야 제작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- O 공공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민간-공공 협력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지원하여. 디지털 뉴딜에 맞춤된 사업분야 개척
- O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도내 문화콘텐츠 분야 新성장동력 확보

2. 사업개요

- O 사업기간: 협약일로부터 ~ 2021. 11. 15.
- 지원규모: 총 2개과제 선정(과제당 40,000천원 지원)
- O 지원대상
 -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사 소재지를 두고 콘텐츠 관련 창작, 기획, 개발, 유통을 하는 제주도내 문화콘텐츠 기업(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 - ※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"문화산업"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에 따른 "문화상품"을 제작하는 제주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
- O 지원유형
 - "공공문화데이터를 활용한 민간-공공협업 기반 콘텐츠 개발지원"
- O 지원내용

구분	공공 문화데이터	자원간수
지정과제	제주도 표선면에 위치한 용천수 7곳 데이터 (용천수명/역사 및 설화 등)	0.7]
자유과제	문화콘텐츠로 개발이 가능한 제주기반 공공데이터	2건

※ 지정과제에 대한 세부 데이터는 사업안내서 및 별첨자료 참조

내용	
 (지원주제) 제주문화산업에 적용 할 수 있는 공공문화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-공공 협업 기반 콘텐츠 개발 지원 (지원내용) 공공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원하는 도내기업에게 개발 비용 지원 (최종사업량) 공공 문화데이터 활용한 콘텐츠 개발 1식/ 신규채용(작긴접) 1명(정규직) 	과제당 40,000천원

- ※ 공공성격의 기관(시설, 단체등)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기업이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 및 사업화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(저작권등), 사용승인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인 경우 사용허가에 대한 증빙 필요
- ※ 공고일 이후 채용 건은 신규채용으로 소급하여 인정함(문화콘텐츠 테크업 브릿지사업 연계가능, 본 프로젝트 에 참여하는 인력), 공공/민간에서 발생한 채용 건 모두 인정

공공 문화데이터 정의 및 활용 사례				
	공공의 목적을 가진 기관(시설, 단체 등)이 보유 중인 '문화예술, 문화유산, 문화			
	산업, 관광'등 문화 분야 데이터 또는 문화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데이터			
	예1) 공공포털(OPEN API) 활용 : 제주도 전시문화행사정보→ 기업(제주			
-1.1	문화관련 안내 포털사이트 구축)			
정의	예2) 공공기관(제주도 용천수 데이터) -> 기업(제주물_용천수 홍보관 내			
	견학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한 용천수 소개 및 체험 콘텐츠개발)			
	예3) 공공단체(제주오름관련 설화/이야기 보유) -> 기업(제주오름데이터를			
	활용한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)			
	• 세한도VR : 김정희의 세한도 활용 VR체험 치유 프로그램 개발			
사례	· 국립국악원에서 보유한 문화데이터(국악기 소리DB)를 활용하여 나홀로			
	합주할 수 있는 연주 플랫폼 개발			

O 용어정의

- 문화콘텐츠 영화, 비디오, 음악, 게임, 출판, 방송영상물, 문화재, 캐릭터, 애니메이션, 공연, 미술, 공예, 멀티미디어콘텐츠(앱, 어플리케이션 등), 문화기획, 디자인 등, '문화산업진흥기본법'에 의거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콘텐츠
- 직접고용: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에서 신규로 고용한 건을 의미하며,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건이 있을 경우, 해당 건을 소급하여 인정함
- 간접고용: 사업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외 타 부처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고용 건을 의미하며, 해당 경우 신규 채용으로 소급하여 인정함
 - ※ 직접/간접 고용 모두 4대 보험 가입 건만 인정

O 지원조건

- 선정된 기업은 사업 기간 내에 약정된 신규고용(정규직) 1명 필수 ※ 직/가접 고용 모두 4대 보험이 가입된 건만 인정함

3. 신청접수

O 공고기간: 2021. 6. 30. ~ 2021. 7. 15.

O 접수기간: 2021. 7. 12. ~ 2021. 7. 15. 18:00까지

O 접수방법: 온라인접수

-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ofjeju.kr)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(※ 붙임자료 참조)

※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, 선정평가시 원본서류 제출(접수서류와 제출서류는 동일해야함)

※ 제출마감 기간 전까지 제출서류 보완은 가능하나, 마감시한 이후 신청접수 관련 자료 일체 접수 불가

O 접 수 처: culture@ofjeju.kr

O 문 의: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김영현 책임연구원, 고현숙 선임연구원

☎ Tel 064)735-0628,0633 / ⊠ E-mail culture@ofjeju.kr

O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과제계획서	1부	○[첨부1] 다운로드 후 작성
2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1부	○ 법인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○ 개인사업자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
3	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	원본 각 1부	○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제출
4	최근 2년간 재무제표	각 1부	○최근 2년간 재무제표(2019~2020년도) 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1부로 제출
5	서약서	1부	○[첨부2] 다운로드
6	개인정보이용동의서	1부	○[첨부3] 다운로드
7	자가진단서	1부	○[첨부4] 다운로드
8	평가위원 추첨표	1부	○[첨부5] 다운로드
9	채용확약서	1부	○[첨부6] 다운로드
10	기타 추가 자료	각 1부	○ 공공데이터(DB) 사용허가 증빙관련 서류 ○ 사용할 공공데이터 자료 1부 ○ 주요 실적 관련 증빙(판매, 방송편성, 납품서 등) ○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, 참고 이미지 자료 등

4. 평가

- O 선정평가 : 외부전문가 15인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풀을 구성하고, 사업신청자(기업)이 무작위로 지정한 3회의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
- 평가방법 : 기업 당 20분 이내 대면(발표)평가 진행 ※ 코로나19로 인해 평가방법은 변경이 가능
- O 선정기준
 - 평가위원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 종합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함
 - 우대가점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
-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
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	ㅇ 사업화(활용) 방안	
	ㅇ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향 및 방법의 구체성	40
	ㅇ 타겟팅한 시장의 유효성 및 적절성	
사업수행 역량	ㅇ 수행기업의 개발 역량의 우수성	30
	ㅇ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신규인력 투입의 적절성	
	ㅇ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수행기업간의 연결성	
예산 적정성	ㅇ 예산항목의 적절성	20
	ㅇ 예산 집행계획 수립의 적절성	30
합계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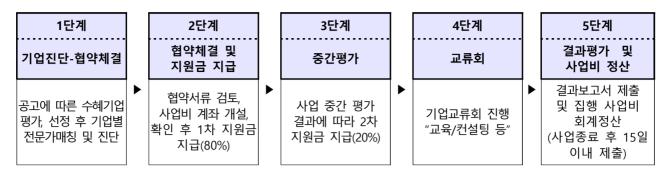
O 우대가점

우대사항	가점	
	초과채용 1명(2점)	
o 추가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(확약서 제출) - 의무채용 수(1명)를 초과하는 직접채용 건만 인정함	초과채용 2명(3점)	
	초과채용 3명 이상(5점)	
주관(수행)기업이 (예비)사회적기업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필수	1점	
o 주관(수행)기업이 여성기업인 경우 - 증빙서류 제출 필수	1점	

※ 모든 가점사항은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함

○ 결과발표 :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시 후 선정기업 개별 통보

O 과제수행절차



※ 지원금 지급비율과 방식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5. 기타사항

-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
-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기업이 선정기업 수에 미달될 경우, 공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-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본 사업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문화산업진흥기본법,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,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수행기업(자)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O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(자), 수혜기업(자)의 책임으로 봄
-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 취를 취할 수 있음
-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제재조치 내용(수행기관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(재)제주영상·문화 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음
- O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 지에 따른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
- 자세한 내용은 [붙임1. 2021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안내서] 참조

6. 유의사항

- O 중복지원 여부
 -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산출물(제시 프로젝트)로 기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불가하며, 추후 중복지원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

- 본 기관 또는 타 기관과 유사/동일 프로젝트로 동 기간에 복수 지원하여, 복수 선정된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본 기관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 포기해야 함
- 사전검토 결과,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 - 사업기간 내 제작 완료가 불가능한 과제인 경우
 -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 - 신청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(개인)는 참여불가
 -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 - 법정관리·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회생, 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 -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
 -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
 - ※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원장